#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0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•제11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0월 20일) 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청소사업소장 문병섭)

#### □ 제안이유

○ 폐기물처리시설(대장동 소각장)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(2004. 10. 23)가 만료됨에 따라,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□ 동의요구내용

○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

구 분	성 명	성별	생년월일	주소 또는 소속	비고(임기)
계	7명				
위원(주민대표)	한정순	여	53. 3. 21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1-3	2006.10.23
위원(주민대표)	박수재	여	58. 12. 7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-15	"
위원(시의원)	정윤종	남	55. 9. 29	부천시의회의원	"
위원(시의원)	김상택	남	59. 2. 17	부천시의회의원	"
위원(시의원)	서영석	남	64. 9. 16	부천시의회의원	"
위원(전문가)	여운호	남	55. 8. 1	인천전문대학 교수	"
위원(전문가)	김미경	여	62. 7. 30	경인여자대학 부교수	"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# 질 의 내 용

- 위원 중에 주민대표 2명이 있는데 소각장 인근에 사시는 분입니까?
- 위원 중 시의원의 역할이 민원 발생시 중재 등 쉽지 않은 역할 로서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 위 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?
- 위원 중 전문가로 선정 된 분들의 전공이 지원협의체의 역할과 부합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?
- 전문가들은 이번에 선정하지 않 다음 기회에 선정하여도 큰 문제는 고 다음 기회에 선정해도 큰 문 제가 없습니까?

#### 답 변 내 용

- 네. 인근 300미터 안에 거주하시 는 분들입니다.
- 명문 규정상 특별히 어느 지역 시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라는 내용 은 없으며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.
- 부천에는 관련분야 전공자가 없어 외 부 인시를 위촉하였으며 화공, 환경분야를 전공하고 있어 관련 있다고 봅니다.
- 없습니다.

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# 5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

# 6. 소수의견 요지

○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시의원 3명.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2명.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총 7명으로 되어 있어 적정하지만 대장동 소각장은 오정동에 위치하고 있어 오정동 소속의원도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 함.

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

의 안	제305호		
번 호	세3U3모 		
의 결	2004. 10. 22		
년월일	(제115회)		

제출년월일 : 2004. 10. 5

제 출 자:부천시장

#### □ 제안사유

○ 폐기물처리시설(대장동 소각장)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(2004.10.23)가 만료됨에 따라,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□ 동의 요구내용

○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

구분	구분 성 명 성별		생년월일			주소 또는 소속	비고
, _			0022			1	(임기)
계	7명						
위원 (주민대표)	한정순	여	53.	3.	21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1-3 2	2006.10.23
위원 (주민대표)	박수재	여	58.	12.	7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-15	"
위원 (시의원)	정윤종	남	55.	9.	29	부천시의회의원	"
위원 (시의원)	김상택	남	59.	2.	17	부천시의회의원	"
위원 (시의원)	서영석	남	64.	9.	16	부천시의회의원	"
위원 (전문가)	여운호	남	55.	8.	1	인천전문대학 교수	"
위원 (전문가)	김미경	여	62.	7.	30	경인여자대학 부교수	"

## □ 참고사항(관계법규)
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

#### □ 관계법규 조문

法 施 行 令

- 第17條의2【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】
  - ①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사군구의회 의원,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 및 사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(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  - 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- ②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 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第17條의2【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제18조【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】
  -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"주민지원협의체"(이하 "지원협의체"라 한다)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-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  - 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 -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 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 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, 이를 폐기 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 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[별표 2] <u>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</u> (제18조제1항관련)

1. 지원협의체의 정원

폐기물매립.	시 설	폐 기 물 소 각 시 설		
조성면적	정원	처리규모	정원	
100만제곱미터이상	21인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이상	15인이내	
100만제곱미터미만	15인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미만	11인이내	

2. 지원협의체의 위원

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, 환경상 영향의 정도,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 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가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의회의원
- 나. 주변영향지역(주변영향지역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)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사·군·구의회에서 선정한 읍·면·동 별 주민대표
- 다.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
- 비 고: 1.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. 2. 주변영향지역(주변영향지역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이내)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를 위촉하지 아니하고,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사·군·구의회 의원 각 4인과 사·군·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 원협의체를 구성한다.
  - 3.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, 국·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환경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 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